

3) 침체기의 소작쟁의

순천지역의 소작쟁의는 1925년경부터 점차 침체의 경향을 보이다가 1926년에 이르면 면단위 농민대회는 물론이고 순천농민연합회조차도 거의 활동이 없을 정도로 쇠퇴를 거듭하였다. 가령 당시의 신문을 보면 앞시기와 달리 이들의 활동에 대한 보도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면단위의 조직으로서 유일하게 순천면 농민공제회(순천면 농민대회 후신 조직)가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소작관계 개선과 관련한 결의를 채택하고 지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928년 가을 소작농민들의 호소에 감응하여 순천농민연합회 회장 장국현이 지주를 개별 방문하여 분쟁을 해결했다는 사실 또는 박병두·장국현·이창수가 역할분담을 하여 농촌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전개한 사실 등이 확인될 뿐이다.¹⁾

이런 가운데 농민연합회는 1929년 4월 제10회 정기대회를 열고 조직의 명칭을 순천농민조합²⁾으로 변경하면서, 소작권 보장의 건, 농민교양에 관한 건, 농사개량에 관한 건, 산업조합에 관한 건, 순회 농사강화의 건 등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때 채택된 결의는 앞시기와 달리 구체적인 투쟁과 무관한 의례적인 것일 뿐이었다. 순천농민조합은 주암지부(지부장 조성모), 황전면반, 서면지부, 순천면지부 등을 산하에 거느리고 있었으나 면단위 지부의 활동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³⁾

조직을 개편한 이후 순천농민조합은 1929년 가을 농작상황을 조사하는 활동, 경성 부재지주의 소작권 이동사건에 개입하는 활동, 춘잠공판 부정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원을 파견하는 활동, 1931년 가을 순천군 각 지주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활동 등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악지주’의 이름을 ‘모지주(某地主)’로 표현할 만큼 투쟁역량을 상실하였다. 순천농민조합은 1931년 가을 소작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분쟁내용을 조사하는 활동을 전개하고자 했으나, 경찰의 해산 강요로 이것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⁴⁾

이런 가운데 순천지역의 소작조건은 지주들의 대반격에 압도되어 점차 악화되어만 갔다. 특히 1931년과 1932년에는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들의 소작료 남징은 가혹하게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황전면 지주들의 5할 도조 요구사건, 순천군 서면지주의 소작료 남징사건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당시 신문보도에 따르면 순천군 일반지주들은 수확량이 2할 3푼이나 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작료는 오히려 5할 5푼이나 늘려서 징수하였다고 한다.⁵⁾ 상황이 이러하자 순천농민의 농가경제는 재생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1932년 5월 현재 순천지역에는 곡식을 꾸어 연명하는 자가 4,767호, 2만 4,007명,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자가 2,537호, 1만 1,317명, 각지로 유리결식하는 자가 1,422호, 8,727명이었다. 1933년에는 순천군 2만 3,000여 호 가운데 절량농가가 무려 1만 9,000여 호에 달하는 등 농가경제가 파탄상태에 이르렀다.⁶⁾

1) 『경외일보』 1928. 8. 7·1928. 8. 16·『동아일보』 1928. 12. 4·1928. 12. 18.

2) 『동아일보』 1929. 4. 12. 농민조합의 위원장은 박병두였으며, 의사부와 공제부, 정의부와 정치부, 재정부와 교양부, 조사부 등의 부서가 두어졌다.

3) 『조선일보』 1929. 4. 10·『동아일보』 1929. 4. 20·1929. 4. 27·1929. 5. 10·1929. 10. 8.

4) 『동아일보』 1929. 9. 20·1930. 4. 29·1931. 10. 11·1931. 11. 15·1931. 11. 21·『조선일보』 1930. 6. 15. 위의 쟁의가 발생하자 오히려 順天農會가 더 앞장서서, 분란을 일으킨 지주들에게 ‘경고적 통고문’을 발송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5) 『동아일보』 1931. 11. 14·1931. 11. 24·1931. 12. 3·1932. 10. 26·1932. 11. 17·1932. 12. 2.

6) 『동아일보』 1932. 9. 5·1933. 2. 18.

농가경제가 재생산불능 상태에 이르자 총독부는 ‘조선농촌진흥운동(1932~1941)’을 전개하면서 그 부수대책(진흥대책)으로 조선소작조정령과 조선농지령을 발표하였다. 비록 한계가 많은 정책들이기는 하나 조선소작조정령, 조선농지령의 실시로 지주들의 착취율은 일정하게 낮아진 것으로 보이며, 소작쟁의도 대부분 위의 제령(制令)들을 기초로 하여 처리되었다. 가령 1933년 5월 현재 조선소작조정령이 발표된 이래 순천지역에서는 순천소작조정위원회가 7건의 사건을 중재하였으며, 10건은 미결상태, 1건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가령, 순천의 ‘악지주’로 유명했던 김종익은 1934년 봄 군내의 자기토지 소작인 560여 명의 소작권을 한꺼번에 박탈하여 물의를 빚었는데 이 사건도 결국은 위의 법령에 의거하여 조정되었다. 1939년 1월부터 6월까지 순천군에서 발생한 소작쟁의(주로 무고 이작사건) 건수는 136건(1938년 같은 기간 건수는 196건)이었는데 모두 분쟁조정사건이었다.⁷⁾

7) 『동아일보』 1933. 6. 3 • 1934. 4. 13 • 1939. 6. 16.